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종갑 의원)

의안 번호	23-8
----------	------

발의년월일 : 2023. 2. .

발의자 : 신종갑,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안미자, 이상원, 장정희,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지원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의용소방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1. 31. ~ 2.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

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6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 지원

나.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
추계서 작성) 제2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최유향
연 락 처	02-3153-9467